

1회 신청으로 1년 내내 알아서 드립니다!

지원금액

-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 ▶ 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
-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

지급방식

-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
 - ▶ 인원 및 보수 변동시 변경신청 필요
- ❖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

사회보험료 지원까지 꼭 챙기세요!

사회보험료 지원방안

-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 수준 향상
 - ▶ 지원대상 기준보수 (현행) 월 보수 140만원 미만 → (개선) 190만원 미만
 - ▶ 5인 미만 사업장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현행) 60% → (개선) 신규 90% (5~10인미만 80%)
- ❖ 건강보험료 50% 경감 (*18년 한시)
 - ▶ 해당 사업장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
- ❖ 4대 보험 신규가입시 2년간 세액공제
 - ▶ 10인 미만 고용기업 보험료 부담액의 50%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월부담액

13.8만원 → 1.7만원으로 경감

- ▶ 5인 미만 사업체, 월 보수 157만원 (최저임금 100%)
노동자 1인 기준, 산재보험 제외



집, 일터에서 바로
가까운 곳에서 접수하세요!

신청서 접수

❖ 온라인

- ▶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방문 · 우편 · 팩스 (3,940개소)

-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명칭 (운영기관)	사이트 주소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공단)	www.4insure.or.kr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근로복지공단)	total.kcomwel.or.kr
국민건강보험 EDI (국민건강보험공단)	edi.nhis.or.kr
국민연금 EDI (국민연금공단)	minwon.nps.or.kr
고용보험 EDI (한국고용정보원)	www.ei.go.kr

문의 · 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센터 1350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농업인 여러분
꼭 신청하세요!





업종에 관계없이 경영주라면 신청하세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
- ❖ 최저임금 준수 조건
 - ▶ 단,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담공개 사업자,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제외
- ❖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 정규직·계약직·일용직·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
 - ▶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지원제외
- ❖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 (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농업분야도 꼭 신청하세요!

지원기준 : 농업분야도 타 업종과 동일

- ❖ 농업분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기준*도 타 업종과 동일
 - *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방식, 신청서 접수, 사회보험료 지원방안 등
-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기존 '고용보험 서식' 등을 활용

신청서류(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 ❖ '18년 신규 사업장 및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 첨부서류(체크리스트, 일자리안정자금신청세부내역, 임금지급대장, 무통장입금증, 급여통장사본 등)
- ❖ 기 적용(가입)사업장 :
 - ▶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 첨부서류(체크리스트, 일자리안정자금신청 세부내역, 임금지급대장, 무통장입금증, 급여통장사본 등)
- ❖ 일용근로자 :
 -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첨부서류(체크리스트, 일자리안정자금신청세부내역, 임금지급대장, 무통장입금증, 급여통장사본 등)

사회보험 미가입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18.1.1~3.31)

사회보험 가입 부담 추가 경감을 위해, 동 기간중 신고·가입 건에 대해서는 기존 미신고 과태료 면제



농업분야 5인미만 사업체 신청 방법 안내(법인 제외)

농업분야 특별 해당사항

- ❖ 법인이 아닌 상시 5명 미만 근로자 고용 농업경영체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지원대상에 포함

신청서류 : 일자리안정자금신청서 및 부속서류

〈부속서류〉

- ① 농업인 확인서류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증, 가축사육업 등록증 등
 - ② 신청대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 ③ 임금지급내역 확인서류 등*
 - * 임금대장 또는 임금지급 증빙서류(무통장입금증, 급여통장사본 등)
- ※ 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
일자리안정자금사업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일자리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추가 제출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가적인 간접 지원 방안도 시행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인의 인건비 부담 및 일손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 농촌인력중개, 취업지원 등 간접 지원 방안도 '18년부터 추진